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25

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건태・강준현

안태준 • 윤종군 • 이재관

이정문 • 이연희 • 복기왕

이춘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.

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.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,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비용부담의 특례 등) ①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운영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철도노선(이하 이 조에서 "기존 철도노선"이라 한다)을 연장하는 철도건설사업(이하 이 조에서 "철도노선 연장사업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은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른다.
 - 1. 기존 철도노선에 대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
 - 2.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 추정금액(철도노선 연장사업비에 기존 철도노선 건설사업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「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」 제18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「국가재정 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

 않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철도노선 연 장사업에 대하여 「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에 따 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.